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000호

도시관리계획(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2호(2023.9.7.)로 결정된 「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4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10.23.)를 거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2월 26일
서울특별시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위치한 동빙고공원(용산동6가 69-162, 69-163, 69-176)에 대하여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(도시계획시설(공원) 면적 증가 및 공간적범위 결정을 통한 비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입지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①	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이촌동, 서빙고동 일대	853,744.4	-	853,744.4	-

②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)

1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가. 용도지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나. 용도지구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2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

가. 교통시설 : 변경없음

나. 공간시설 : 변경

1) 공원 : 변경

■ 공원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1	공원	근린공원	용산동6가 69-162, 69-163	26,849.0	-	26,849.0	건설부고시 제138호 (77.07.09)	동빙고공원
변경	1	공원	근린공원	용산동6가 69-162, 69-163, 69-176	26,849.0	증) 665.6	27,514.6		•동빙고공원 •공간적범위결정
기정	2	공원	소공원	이촌동 300-14	4,960.0	-	4,960.0	서울시고시 제98호 (06.03.23)	
기정	3	공원	어린이 공원	이촌동 408	1,766.6	-	1,766.6	-	강변공원
기정	4	공원	어린이 공원	이촌동301-60	1,736.9	-	1,736.9	-	이촌공원
기정	5	공원	소공원	이촌동 429	1,500.0	-	1,500.0	서울시고시 제98호 (06.03.23)	사촌공원
기정	6	공원	어린이 공원	이촌동 301-86	1,352.4	-	1,352.4	-	꿈나무공원
기정	7	공원	소공원	이촌동 417	889.0	-	889.0	서울시고시 제98호 (06.03.23)	
기정	8	공원	소공원	이촌동301-170 번지 일원	559.8	-	559.8		
기정	9	공원	소공원	이촌동425	546.8	-	546.8		
기정	10	공원	소공원	이촌동421	377.5	-	377.5		
기정	11	공원	소공원	이촌동399	231.5	-	231.5		
기정	12	공원	소공원	이촌동 437번지 일원	4,325.1	-	4,325.1		한우리공원
기정	13	공원	소공원	서빙고동241-21	5,684.2	-	5,684.2		

※ 도시계획시설(동빙고 공원) 중 일부 필지(용산동6가 69-163)만 공간적 범위 결정함

■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공원	• 공원면적 증가 • 공간적범위결정	• 북측 민간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추가 편입하여 공원 확장 (26,849.0㎡ → 27,514.6㎡) •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(공원)부지 내 비도시 계획시설(주차장)을 입지하게 하고자 공간적범위결정

■ 공원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				최초 결정일	비고	
			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		
신설	공원	근린 공원	용산동 6가 69-162, 69-163, 69-176	면적(㎡)		-	증) 9,323.6	9,323.6	건설부 고시 제138호 (77.07.09)	공간적 결정범위는 결정도 참조
				높이	지상	-	전체	전체		
					지하	-	(계획지반고 기준) 지하 12m 초과 구간	(계획지반고 기준) 지하 12m 초과 구간		

※ 단, 지하부 중 공간적범위결정 구간 외에도 도시공원 내 수목 식재를 위한 토피고 등 도시공원 취지와 부합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간은 공간적범위결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으로 활용되도록 함.

■ 공원 공간적 범위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	변경내용	변경사유
1	공원	- 공간적 범위 결정 - 수평투영면적 : 9,323.6㎡ - 높이 - 지상부 : 전체 - 지하부 : 지하 12m 초과 구간 (계획지반고 기준)	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(공원) 부지 내 비도시계획시설(주차장 : 계획지반고~계획지반고로부터 지하 12m, 수평투영면적 9,323.6㎡)을 입지하게 하고자 공간적범위결정

2) 녹지 : 변경없음

3) 공공공지 : 변경없음

다. 공공·문화체육시설 : 변경없음

라. 환경기초시설 : 변경없음

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(변경없음)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3. 건축물 배치·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4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5.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6. 리모델링 사업 추진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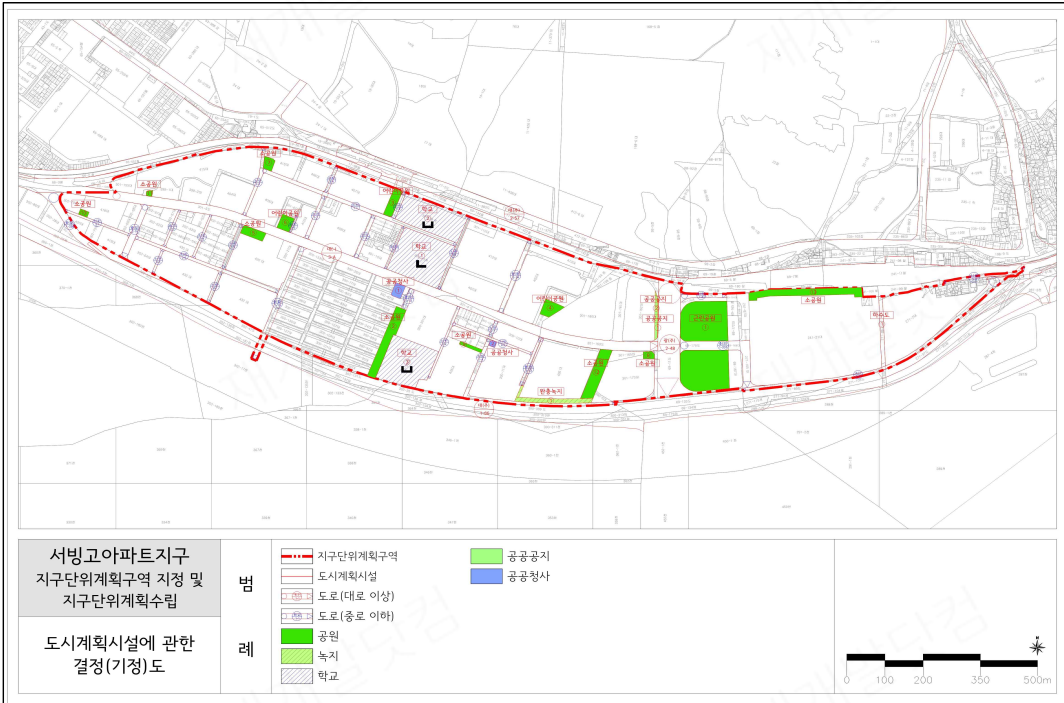
④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1.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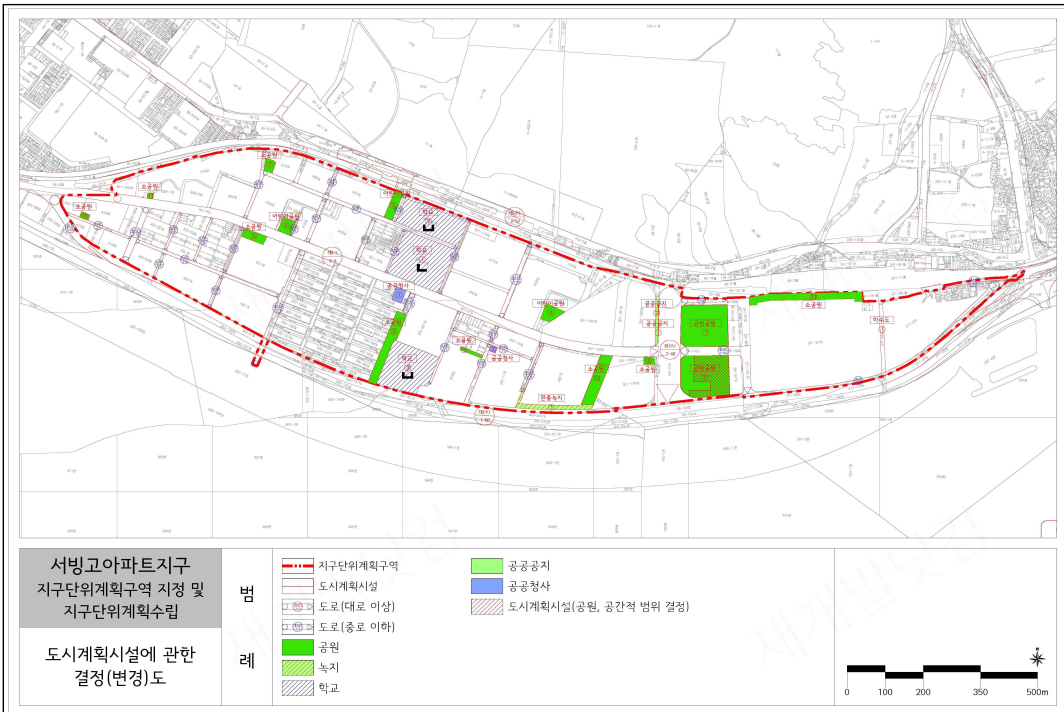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>) 및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s://urban.seoul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>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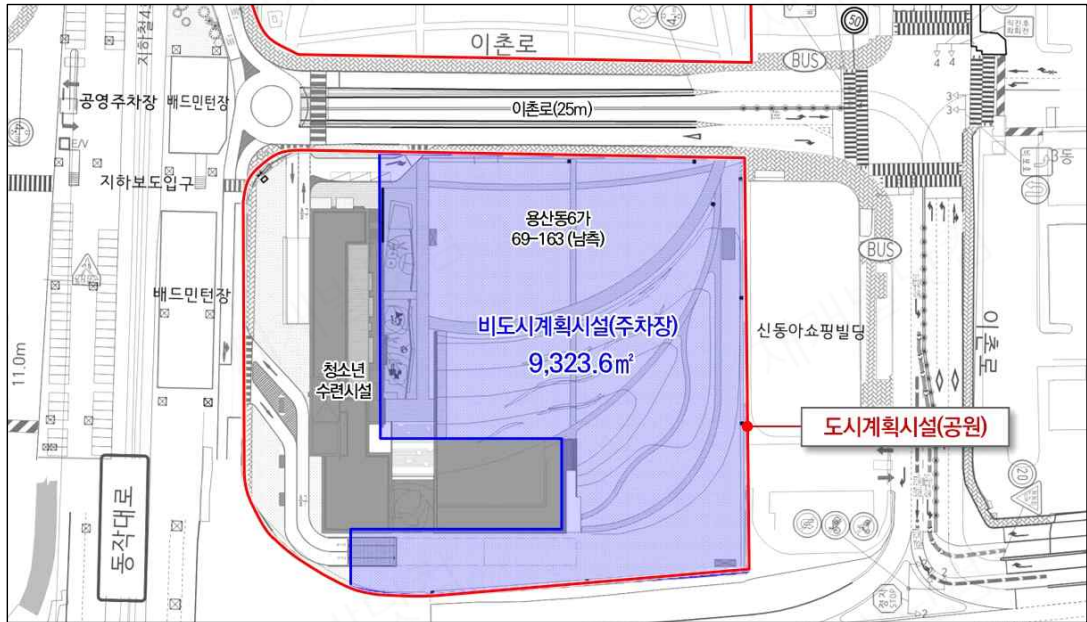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

■ 도시계획시설 및 비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결정 위치

〈 배치도 〉



〈 단면도 〉

